

행정자치부

시정요구

제 목 4층이상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중과 누락

기 관 명 중구, 강서구, 동래구

내 용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의2의 규정에 따르면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과세권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건축물이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중과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해당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를 중과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사후 중과가 누락된 경우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부산광역시 중구, 강서구, 동래구에서는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대

해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의 중과가 누락되었음에도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5건 / 20,176,940원 추징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중구청장, 강서구청장, 동래구청장은

[시정]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임에도 과세 소홀로 부과누락한 지역자원시설세 5건 / 20,176,940원에 대하여 부과·징수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